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5. 15.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09년 5월 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5. 11.)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09. 2. 6)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안 59조제1호)

과 세 표 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하는 것임.

개정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P 상승함. 이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증가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도 공동시설세 '08년 부과액 177억 원 대비 13.1%인 23억 원의 징수감소는 예상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5%P 상승과 기업유치 등 건축물의 증가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생 략”

V. 토론 요지：“생 략”

VI. 심사 결과：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공동시설세 납세

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생략)</p> <p>1. <u>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u></p> <p><u>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u></p> <p><u>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u></p>	<p>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과 같음)</p> <p>1. <u>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0 0 0 분 의 0.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0 0 0 분 의 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0 0 0 분 의 0.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0 0 0 분 의 0.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0 0 0 분 의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0 0 0 분 의 1.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 0 0 0 분 의 1.2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 0 0 0 분 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 0 0 0 분 의 1.2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 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③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